

# 신종 불법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문 상 일\*\*

■—————《目 次》—————	
I. 들어가는 글	IV.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개선
II.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유형	방안
III.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현황과 문제점 분석	V. 나가는 글

## 〈국문초록〉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신종 불법피라미드에 따른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피해사례를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이용하는 유형, 가상화폐 코인을 이용하는 유형, 모바일게임투자를 이용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국내법제의 규제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이 논문은 2016년 2월 26일 개최된 (사)한국유통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관련 규제의 정책방향에 대한 소중한 조언을 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안수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S.J.D)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소액이며 돌려막기식으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총 피해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범죄탐지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액보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금전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금융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관련 법령, 특히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과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몰수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행위로부터 취득한 무형적 이익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종 불법파라미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수사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불법파라미드 업체들의 수신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의 피해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해 업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요소로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유형의 신종 불법파라미드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해 공동조합이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I. 들어가는 글

도매와 소매과정의 일반적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시키는 무점포 판매방식으로 고안된 다단

계판매방식은 상품을 구입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이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판매 영업형태로 20세기 초반부터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sup>1)</sup> 국내에서도 1970년 후반 화장품이나 도서 등의 판매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어 현재까지 성업 중에 있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1991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2000년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단계판매, 특히 불법피라미드판매에 따른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발전된 정보통신기술(ICI)과 결합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라미드의 등장으로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진화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과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행 국내법제의 규제현황과 문제점들을 해외 법제와 비교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신종 불법피라미드식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II.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유형

현행 관련 법령 하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란 제조업자, 판매업자, 그리고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1) 신현윤,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14), 759면; 김창옥,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 「기업법연구」 제8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 856면.

스스로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동시에 순차적·단계적으로 다른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면서 행하여지는 판매를 의미한다.<sup>2)</sup> 이러한 다단계판매방식은 재화 등에 대한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재화의 사용가치나 판매수익보다는 하위판매원의 모집에 따른 고가의 후원수당 등 고수익보장 약속을 통해 고객을 유인함으로써 사행거래가 될 위험성이 높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다시 말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단계판매는 연고판매방식의 의존도가 높아 분쟁발생이 표면화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신규가입자의 확보나 판로개척의 한계가 있어 최하위 판매원은 반품거절 및 가입비 반환거부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sup>3)</sup> 방문판매법에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단계판매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실제 상품판매 거래가 없는 사기성 피라미드 형태의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2년 방문판매법 제11차 개정을 통해 직하위 판매원 실적에 따라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여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변종형태의 유사다단계 영업행위를 규제대상에 포섭시킴으로써<sup>4)</sup> 방문판매법에 의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순차적·단계적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방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는 있으나,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익보다는 하위판매원의 신규

2) 신현윤, 앞의 책, 759면.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정의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에게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한다(방문판매법 제2조 5호 참조).

3) 신현윤, 앞의 책, 759면.

4) 그로 인해 후원방문판매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와 같이 영업개시시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단계판매에서와 동일한 금지행위규정, 후원수당 총액제한규정, 취급제품 가격상한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가입에 따른 수익을 주로 하며, 사행성이 강해 사회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는 각종 파라미드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sup>5)</sup>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률상의 규제를 회피하

- 
- 5)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다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학습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

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후술 하는 바와 같이 현행 방문판매법상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을 비롯한 국내 법령만으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종 피라미드영업행위를 충분히 규제하기 어려워 이로 인한 피해규모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의 유형들을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를 이용하는 유형

2014년 최상위 모집책 A는 실제 투자금이 FX마진거래를 위해 해외로 송금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M이라는 회사는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FX마진거래 전문 회사로, M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에 따라 매월 3-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이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2개월 간 547 억원을 유치하였다. 이후 전자금융결제대행업체 H의 대표 B는 수수료를 받고 H 명의의 계좌를 4개 제공하여 M 투자금 294억 원을 관리하면서, 허위의 자문계약서를 이용해 270 억원을 불법으로 해외로 송금하였다. A는 투자들을 속이기 위해 M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원금과 배당금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A는 해외조직원들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e-money를 국내 투자자 회원계정에 적립해 주고 마치 투자금이 해외 FX 마진거래에 투자된 것처럼 조작하였다. 가상 화폐로 사용한 e-money는 M회사 회원간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각종 수당이나 배당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이 배당받은 e-money에 상응하는 금전을 실제 지급하는 교환기준에 불과하였다.<sup>⑥)</sup>

---

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FX마진거래는 투자 위험이 높아 안정적으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국내 금융투자중개기관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해외 투자를 위한 해외 송금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내 투자중개기관에서는 FX마진거래는 매우 위험한 거래로 투자권유준칙상 ‘초고위험 투자자’에게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 A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펀드 투자,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고, FX 마진거래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다.

과거 부동산투자, 안마기기 렌탈 등 국내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던 금융사기조직들은 2007년 이후 카지노나 금광개발 등 해외투자사업을 명목으로 활동해 오다 최근 저금리 및 경기불황 추세를 이용해 온라인 등을 통해 FX 마진거래와 같은 해외금융상품을 투자자 유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FX 마진거래를 통해서는 투자자들의 원금 상환조차 불가능한 사실상 돌려막기식 폰지사기행위로 취급해야 한다.

## 2.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코인을 이용하는 유형

불법 금융피라미드 영업행위유형 가운데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최신 핀테크(Fintech)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적 유사수신행위이다. 전세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가상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 저장 및 거래되고 교환수단, 회계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민간화폐로서 실제 법정통화와는 교환이 되지 않는다.

최근 적발된 금융사기조직인 C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할 경우 1,000코인을

6) 보도자료, ‘FX마진거래 투자 빙자한 수백억대 유사수신 사기조작 적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 7. 17).

지급하면서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고 선전하며 코인구입으로 부자가 된 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업체는 코인가격 급등으로 투자금 이상의 고수익이 보장되며 현금으로 100% 환전도 가능함은 물론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및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상 이러한 거래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sup>7)</sup>

이처럼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한 피라미드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닌 실험적 지급수단에 불과하며 중앙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거래기록 보관이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발행규모 및 투명성 확보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유망한 투자자산인 것처럼 과장·허위광고 함으로써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화폐 판매행위는 현행법상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지만,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고 판매하는 경우에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모바일게임투자를 이용하는 유형

모바일게임 업체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는 신종 피라미드식 불법 유사수신행위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주로 외국의 유명 모바일게임업체의 한국지사라고 사칭하면서 외국의 모바일게임 업체에 투자하면 15주 안에 원금의 150%를 지급한다는 허위광고를 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외국업체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다단계형식이며, 국내·외에서의 모바일게임 산업 급성장이라는 최근의 추세를 이용해 자금을 모집한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투자자 모집과정에서 해외 본사임원이라고 사칭하는 외국인들을 설

7) 보도자료,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 금융감독원 (2015. 11. 6).

명회에 동원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무료 해외여행 등을 약속하며 대규모 해외투자사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지만, 사실상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상위 투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폰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 4. 선진금융기법을 빙자한 유형

선진 금융시스템 정보에 취약한 노년층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유형도 급증하고 있다. 주로 인터넷 쇼핑몰, 대부업체, 물류업체 등 여러 계열회사를 설립하고 마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대규모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60대 이상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선진금융기법’, ‘빌명·특허출원’등의 용어를 구사하며 기존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함으로써 계좌 잔고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선순환 체크카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현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sup>8)</sup> 특히 수당지급 방식이 5단계의 직급구조와 같은 피라미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진금융기법이라는 ‘선순환 체크카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전혀 협의된 바가 없음은 물론 그 실용화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단지 유사수신을 위한 유인수단으로 이러한 선진금융기법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유형 역시 불법 피라미드식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5. 기타 유형

앞서 설명한 유형 외에도 경기침체 및 저금리기조에 편성하여 고수익을 약속하며 특히 노령층이나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대박심리를 자극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피라미드식 유사수신행위는 같

8) 보도자료, ‘선진금융기법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2014. 7. 10).

수록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사업형태를 가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주로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고위험 금융상품이나 수익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중국과 같은 외국 거래 공기업 투자,<sup>9)</sup> 또는 레저문화 확산 추세를 이용해 호텔식 별장 임대사업 투자<sup>10)</sup>나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하여 창업 준비 중인 자들에게 비타민나무 식재사업 투자 등<sup>11)</sup>의 명목으로 투자를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사이버계(契),<sup>12)</sup> 골드바 유통,<sup>13)</sup>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

9) 실제 사례로 D회사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일반 펀드상품과 달리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중국 거래 공기업 투자를 빙자하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펀드 투자시 투자규모(110달러~ 11,000달러)에 따라 수익률을 매월 3%~3.5%씩 총 150~600%가 될 때까지 지금한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연합뉴스, “중국 투자로 하루 3% 수익”…유사수신업체 기승”(2015. 6.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2/020000\\_0000AKR20150622047900002.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2/020000_0000AKR20150622047900002.HTML).

10) E회사는 호텔식 주말 별장(수익형)의 임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2천만원대의 저렴한 보증금(2,400만원)을 내면 자신만의 별장을 사용하면서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는 국내 유명 여행사나 기업체 등에 임대함으로써 은행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연7%~7%의 확정 임대수익을 3년 동안 지급해 주고, 3년후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준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례이다. 머니투데이, “대박유혹’불법 유사수신업체 서울 강남에 집중” (2015. 6. 22),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5062208412294730&type=1&gubn= undefined>.

11) F비타민나무영농조합을 설립하여 동 조합에 3,300만원(2구좌)을 투자해 임야 500평을 구입하면, 해당 임야에 비타민 나무를 식재해고 영농위탁계약을 체결하면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의 열매 판매 수익을 통해 매년 2,000만원(월 160만 원 정도)씩 10년간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조합원들의 자금을 모집하였다. 중앙일보, ‘비타민나무에 투자해 큰 돈 베세요...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2015. 6. 22), <http://news.joins.com/article/18079746>.

12) G회사는 인터넷상 사이버 대동계(契) 사이트(33만 원방, 66만 원방)를 개설하고,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여 회원이 33만 원방에 가입 후 33만 원을 입금하고 6명의 하위 계정을 모집하게 되면, 피라미드식으로 56만 원 등 최종적으로 총672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고 현혹하여 불법적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헤럴드경제, ‘사이버 대동계 요주의..알고보니 은행 가상계좌 악용한 피라미드’(2014. 7. 2),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702000486>.

13) H회사는 현재 두바이에서 골드바 유통사업을 하는 세계적인 회사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골드바에 1050유로(한화 약 150만 원)을 투자하고 2명의 투자를 추천하면 고수의 보상프로그램에 의해 5,950유로(약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투자자 2명을 추천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면서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례이다. 디지털타임스, “골드바-보석광산에 투자해 큰 수익”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 적발”(2015. 6. 22),

용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더욱이 최근 유사수신업체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거나,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SNS를 통한 파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확산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와 같은 신종 불법파라미드식 영업행위의 모집유형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 유형<sup>14)</sup>

투자자 모집유형	비중 (2014년, 2015년 1월~3월 기준)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 가장	24.3%
비상장주식,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펀테크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사업 가장	22.9%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조립·판매사업 가장	14.3%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등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 사업 가장	5.7%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전통계조직 등 투자사업 가장	5.7%
골드바 유통, 납글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고대 골동품 거래, 로봇승마,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특허기술 개방 등 사업운영	27.1%

1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2202109958785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2202109958785001).

14) 보도자료,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점점 교묘해지는 유사수신 수법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2015. 6. 23), 3면.

### III.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현황과 문제점 분석

#### 1. 규제의 필요성

불법 피라미드식 영업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국민들을 판매원이나 투자자로 모집하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여 하위 판매단계의 조직 확장에 한계가 있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상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증가하면서 결국 하위 판매원이나 신규 투자자의 투자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결국 수당감소 또는 지급불능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 즉 투자자 전원이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증대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업방식은 다양한 투자기법을 활용해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함에 따라 사기적 성격이 농후하며 사회적으로 사행심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인간관계를 파괴시킴에 따라 전체 사회의 공서양속과 기본질서를 파괴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 본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 행위에 대한 현행 법제의 규제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법무부의 지속적인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sup>15)</sup>

#### 2. 국내법제 현황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 규제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국내법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5) 2015년 11월 기준 검찰 수사 자료에 의하면 불법 금융피라미드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를 받은 주요 업체들의 투자금 모집 규모는 아래와 같다.

금지규정	위법행위	벌 칙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8호 <sup>16)</sup>	무등록 영업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sup>17)</sup>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sup>18)</sup>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sup>19)</sup>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3조 <sup>20)</sup>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sup>21)</sup>	
형법 제347조 <sup>22)</sup>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 제3조 <sup>23)</sup>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형	주요 업체 및 모집 규모(단위: 원)
FX 마진거래	맥심트레이더(1조5천억), IDS홀딩스(1조), 티엠인텍스(1천억)
가상화폐	젬코인(3천억~5천억), 유토큰(3천억~4천억), 힉스코인(2천억~3천억)
해외부동산개발	망고9(1천억)
의료기 등 실물투자	해피소닉글로벌(8천억~1조), JS멤버스(2천억~3천억)
SNS 광고권 투자	엠페어스(2천억)
사모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7천억)
파생상품	이숨투자자문(1천3백억)

\* 괄호 안은 업계추정 모집규모. 한국경제, '1000만원이면 글로벌기업 웹사이트 '뚝딱'' (2015.

11. 26)

16) 방문판매법 제23조 (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합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7)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3호.

18) 방문판매법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 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 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 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 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19)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제4호.

20)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22)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1)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규정 및 형사처벌 규정((방문판매법 제24조, 제58조)

2012년 방문판매법 개정시 과거 다단계판매 금지행위와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불법파라미드 판매유형을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율함과 동시에 벌칙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대학생 다단계 등과 같이 취업명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하위판매원 확장에 치중함으로써 거래 자체가 사행화 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 및 이와 유사한 다단계 조직의 탈법적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기 위함이었다.<sup>24)</sup> 동법 제24조에서는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행위 등과 같은 소위 금융파라미드 영업행위를 금지시키고, 더불어 취업명목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하위판매원 확장에 치중하는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조의 신설로 인해 법률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형태를 금지시키고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행위에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미등록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에는 그 적용

---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3)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4) 이종구, '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제18집 제2호, 539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8).

상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더불어 동법 제24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판매 또는 거래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sup>25)</sup>

## (2)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0년 제정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서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취하는 소위 금융피라미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투자자는 예금자보호법 등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불법 금융피라미드 영업행위는 대부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동법에 따른 금지행위 유형에는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그리고 (4) 장래에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포함되는데,<sup>26)</sup> FX마진거래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두 번째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법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나

---

25)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4호 참조.

26)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각 호 참조.

광고행위도 금지<sup>27)</sup>할 뿐 아니라 영업을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의 사용도 금지<sup>28)</sup>하고 있다.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해 두고 있다.<sup>29)</sup>

### (3) 사기죄(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는 불법피라미드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배임죄, 공갈죄, 횡령죄, 문서위조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금융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주체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득 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 (4) 규제적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 본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 유형들은 대부분 금융상품을 투자수단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비밀리에 신규 투자자들을 확대함으로 인해 모집규모가 급속한 속도로 지역적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는 등 국가경제 건전성 유지에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고와 유사한 수준의 법적 대응이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27)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28)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9)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형사법 체계하에서는 실 효성 있는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신종 불법파라미드 업체들이 현행법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법상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존재해야 하고, 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0)</sup> 그리고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알선수수료·장려금·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을 의미한다.<sup>31)</sup>

따라서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후원수당)의 지급이 유인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불법파라미드식 영업행위들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해 동법상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많아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또는 변형시킨 불법적 파라미드식 영업행위

---

30)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참조.

31) 방문판매법 제2조 제9호 참조.

를 통한 금전투자수단으로의 악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3년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을 개정해 범행에 이용되는 조직의 태양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융파라미드식 영업행위를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동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동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변종 영업 행위를 금지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sup>32)</sup>

또한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간접적으로 신종 불법파라미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사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무죄추정원칙 및 엄격한 구성요건 입증책임 등으로 인해 범죄행위시, 다시 말해 투자자 피해발생시점으로부터 범죄행위 적발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그 사이 투자자의 피해규모가 급속히 확산되는 신종 불법파라미드 범죄행위의 특성상 시의성 있는 적절한 규제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규제효과 역시 그리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이는 동법의 입법취지가 직접적으로 불법파라미드식 금전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에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규모, 다시 말해 영업행위에 따른 이득액에 비해 형사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게 정해져 있어 사전 위하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대부분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피해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적·사후적 규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덧붙여, 신종 불법파라미드 범죄의 경우 구조상 여러 단계의 판매원들이

32) 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고단2131, 2014고단2422(병합) 판결 참조. 동법 개정 전 현법재판소 역시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의 동법 적용대상 범위에 관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현법재판소 2012. 0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참조).

존재하고 있어 최하위 단계 투자자인 판매원을 제외한 중간 판매단계의 투자자들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하위 판매원들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범죄 구성요건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최근의 신종 불법피라미드에서의 개인 피해금액(즉, 투자금액)이 수십만원(예, 사이버계의 경우)에서 수백만 원(FX마진거래나 가상화폐 등의 경우)에 불과한 소액에 그치고 있어 개인 피해자들이 형사사건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고, 금융피라미드 특성상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초기 범죄탐지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기소가 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손실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sup>33)</sup>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방문판매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불법 피라미드 영업주체들은 미등록 일반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진입단계 및 영업단계에서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 3. 해외법제 현황

#### (1) 미국

미국에서는 장소의 구애 없이 대면방식(face to face)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직접판매(direct selling)라고 총칭하고 있으며,<sup>34)</sup> 방문판매(door to door sales)와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를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 다단계 직접판매(Multi-level Direct Selling), 관계 마케팅(Relationship Marketing)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33) 한국경제, '1천억 사기 쳐도 원금 짚으면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옥중범죄'도 활개' (2015. 12. 1).

34) <http://www.wfdsa.org> ; 연구용역보고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한국법제연구원·직접판매공제조합, 2008. 2), 11면 ; 김홍석·한경수, 「개정 방문판매법 해설」(도서출판 일새, 2012), 376면.

특히 미국의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법제의 초점은 주로 해당 사업이 합법적인 다단계인지 아니면 불법적 피라미드 체계인지에 대한 구별에 있는데,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합법적 다단계로 보지만, 상품 판매와 무관하게 직·간접적으로 후순위 판매원 가입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불법피라미드로 분류하고 있다.

불법피라미드식 영업행위가 일찍 시작된 미국에서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연방과 각주 입법례가 상이한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연방차원에서 다단계판매나 불법피라미드 판매(Pyramid Scheme)에 대한 직접적 규제법은 없지만,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가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거래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과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나 거래관행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규정<sup>35)</sup>에 의해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판례이론을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FTC는 불법피라미드 판단 기준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현실적 투자에 의한 수익을 기초로 하지 않고, 주로 자신의 판매프로그램에 타인을 가입시키는 것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징표로서 재고적재(inventory loading)과 소매의 부존재(lack of retail sale)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36)</sup>

그 외 각 주별로 입법을 통해 불법피라미드 판매행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크게 주 법상 개념정의 된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유형을 특정해서 규제하는 다단계유통법 방식(Multi-level distribution statutes)과 불법피라미드 영업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Pyramid statut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규율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주로서는 Georgia, Maryland, Massachusetts,

35) 15 U.C. Code §45(a)(1)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affecting commerce, and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or affecting commerce, are hereby declared unlawful.

36)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단국대학교, 2010), 4~6면. FTC는 1975년 *In the Matter of Koscot Interplanetary, Inc.* 결정을 통해 피라미드영업을 '최종 소비자에 대한 재화 판매와 무관하게 다른 판매원 유치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See 86 F.T.C. 1106, 1180 (1975).

Montana, Puerto Rico, Wyoming 주가 대표적이다. 반면 대다수 주에서는 후자유형의 불법파라미드판매만을 규율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체로 불법파라미드 판매행위를 불법적 거래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주에 따라 불법파라미드의 정의는 조금씩 상이하게 정하고 있지만<sup>37)</sup> 공통적으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규정에 따라 규율<sup>38)</sup>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불법파라미드 영업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미국 연방법과 주요 주법의 내용과 더불어 판례법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불법파라미드 영업피해의 최근 동향

최근 미국에서도 불법파라미드 영업방식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드러난 대규모 폰지형 영업행위 사건이 67건 이상에 달하며, 한 회사가 평균 4,400만 달러의 모집규모를 나타내고 있고, 2013년 한 해 동안 총 모집금액은 13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폰지형 사기영업행위에 가담한 최소 117명에 대해 당해 연도에 선고된 징역형의 총 연수의 합이 1,000년을 초과(1인당 평균 약 8.5년형 선고)하였으며, 9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sup>39)</sup> 최근 적발된 폰지형 사기영업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37) North Carolina 주법에서는 'any program utilizing a pyramid or chain process by which a participant gives a valuable consideration for the opportunity to receive compensation or things of value in return for inducing other persons to become participants in the program'을 'Pyramid'라고 정의하고 있으며(N.C.St. 14-291.2(b)), New York 주법은 'a sale device whereby a person, upon condition that he make an investment, is granted a license or right to solicit or recruit for profit or economic gain one or more additional persons who are also granted such license or right upon condition of making an investment...'를 'chain distributor scheme'이라 정의하고 있다(N.Y. Gen. Bus. 359-fff). 특히 Texas 주법에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형법에서 'Endless chain'으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V.T.C.A., Penal Code 32.48).

38) New Mexico 주에서는 불법파라미드 판매행위자에 대해 4단계의 중죄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California 주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Delaware 주에서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미만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Louisiana 주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형석, 앞의 논문, 23면 참조.

39) <http://www.ponzitracker.com/main/2013/12/23/2013-ponzi-schemes-in-review-nearly-3-billion-of-ponzi-scheme.html>.

- Pacific Property Assets (PPA) 최고경영자인 Michael Stewart와 John Packard는 2007년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PPA를 이용해 1억 6천 9백만 달러 규모의 폰지형 사기영업행위를 하였으며, 우편전신사기 및 은행사기, 그리고 파산사기 등 11가지 범위반 혐의로 미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Stewart에 대해서는 220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sup>40)</sup>
- Brent Williams와 그 아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혼혹해 Latter-day Saints 교회 신도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해 모집규모 1억 달러에 달하는 Mathon Entities를 운영하다가 폰지형 사기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sup>41)</sup>
- 인터넷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유통사업으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광고를 통해 CKB와 CKB168이라는 두 회사를 운영하던 CEO를 비롯한 임원들은 2천만 달러 규모의 폰지형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대다수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었으며 그 외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42)</sup>
- MRI International Inc.라는 회사를 통해 일본 투자자들을 상대로 모집 규모 8억 달러의 폰지형 투자프로그램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Edwin Yoshihiro Fujinaga는 의료수취계정(medical accounts receivables; MARs)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5년 연방법원은 5억 8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선고했다.<sup>43)</sup>

---

40) <https://www.fbi.gov/losangeles/press-releases/2015/owner-of-orange-county-real-estate-investment-firm-found-guilty-in-fraud-scheme-that-ended-in-169-million-bankruptcy>.

41) <https://www.fbi.gov/houston/press-releases/2013/former-employee-of-deceased-friendswood-financial-advisor-convicted-of-running-own-ponzi-scheme>.

42) <http://www.ponzitracker.com/main/2013/10/17/sec-stops-20-million-pyramid-scheme-touting-youth-education.html>.

43)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5/lr23184.htm>.

250만 달러 규모의 폰지형 투자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Brian Dinning에 대해서는 12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모집자금들이 남아프리카 부동산투자 및 금광과 다이어몬드 광산업에 전액 투자하였으며, 그 수익은 남아프리카 야생동물보호사업을 위해 전액 기부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유죄가 확정되었다.<sup>44)</sup>

- 2013년 FBI는 MARS 상품투자를 명목으로 2억 7천 5백만 달러를 모집해 폰지 영업행위를 한 Jonathan Resenberg와 Richard Shusterman를 기소하였는데, 이들은 해당 상품을 해지펀드회사와 일반투자자들에게 재판매할 경우 큰 수익이 창출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생수회사인 Le-Nature의 전직 CEO였던 Gregory Podlucky는 대출형 폰지프로그램(loan-Ponzi scheme)를 운영하며 회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전망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6억 8천 5백만 달러를 집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되었다.<sup>45)</sup>

이처럼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단기간투자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현혹하며 다양한 투자상품들을 미끼로 한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규제노력도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자본의 국제적 흐름이 과거에 비해 용이해진 환경을 이용해 국내외 투자자 및 투자상품 외에도 외국 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하며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은 금융상품들을 이용해 금융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투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으로 권유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규제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함 목적으로 SNS나 인터넷을 활용해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모집하

44) <https://www.sec.gov/litigation/litreleases/2015/lr23184.htm>.

45) [https://www.justice.gov/archive/usao/paw/news/2011/2011\\_october/2011\\_10\\_20\\_03.html](https://www.justice.gov/archive/usao/paw/news/2011/2011_october/2011_10_20_03.html).

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과 대부분의 경우 고수익 창출을 홍보할 목적으로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서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영업인 Stanford와 Madoff의 경우 모집규모면에서 전자는 20억~70억 달러, 후자는 190억 달러에 달하며, 두 회사 모두 수익을 가장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규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폰지형 불법파라미드 영업방식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모집규모가 증가함과 동시에 운영방식도 나날이 교묘하게 변형되어 발전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 2) 연방 및 각 주 법상 규제

연방법에서는 불법적 다단계판매를 ‘파라미드형식의 다단계판매(pyramid scheme)으로 정의하고 FTC법 제5조(15 U.S. Code §45,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unlawful; prevention by Commission)에 근거해 규제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각 주법의 파라미드규제법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더불어 판례법주의 국가인 미국 법제 특성상 동 조항에 근거한 다양한 연방법원 판례들 역시 사실상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실제 파라미드 사건에 대해서는 FTC법 제5조와 연방법원의 판례법이 중요한 근거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연방 및 각 주 파라미드 규제법들의 입법 취지는 공통적으로 합법적인 재화판매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후순위 판매원 가입에 따른 후원 수당을 주된 수익으로 활용해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함으로써 많은 투자들을 프로그램에 가입시키는 방식의 불법파라미드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근절시키자는데 있다. 이러한 불법파라미드 영업유형은 폰지영업(Ponzi scheme), 항공기플랜(airplane plans), 파라미드(Pyramid), 연쇄편지(chain letters) 등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불법파라미드 영업규제를 위해 파라미드금지법뿐 아니라 우편사기방지법, 증권규제법 등의 연방법률 및 각 주법들을

활용해 오고 있다.

피라미드 영업금지법을 마련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인 켄터키(Kentucky)주 법은, 피라미드 판매방식을 가입자가 다른 가입자를 판매조직에 가입하돌고 유도하는 대가로 일정한 보상이나 기타 가치있는 재화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이를 위해 현금을 지불하거나 재화를 구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는 판매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역시 Endless Chain Statute에서 판매원이 한 명 이상의 후순위 판매원을 가입시킴으로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일체의 모든 사업을 금지시키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sup>46)</sup>

### 3) 판례법상 규제

미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폰지형 영업방식(Ponzi schem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회사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영업방식으로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듯한 외관을 가지나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약속한 고수익 보장약정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영업형태를 의미한다. 폰지식 영업에 따라 약정투자수익 이행으로 인해 당해 회사의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규 투자자 영입을 위해 수익이 창출되고 있는 듯한 허위 외관을 창출하는 회사가 이에 해당한다.”<sup>47)</sup>

또한 2011년 연방 제5 항소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폰지형 영업방식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이용해 최초 투자자들에게 고배당이나 고수익을 인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이용해 보다 대규모 투자금을 확보하려는 사기적 투자영업을 의미한다.”<sup>48)</sup>

46) Cal. Penal Code §321. ('Every person who sells, gives, or in any manner whatever, furnishes or transfers to or for any other person any ticket, chance, share, or interest, or any paper, certificate, or instrument purporting or understood to be or to represent any ticket, chance, share, or interest in, or depending upon the event of any lottery, is guilty of a misdemeanor.').

47) Hirsh v. Arthur Andersen & Co., 72 F.3d. 1085, 1088 n.3 (2d Cir. 1995).

판례법을 주요 법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러한 개념을 기준으로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 (2) 일본

일본에서는 파라미드식 판매행위를 무한연쇄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품(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포함)을 출연하는 가입자가 무한하게 증가하는 것으로서 먼저 가입한 자가 선순위자, 그 이하에 연쇄하여 단계적으로 2배 이상의 배율로써 증가하는 후속의 가입자가 각각의 단계의 후순위자가 되고 선순위자가 후순위자가 출연하는 금품으로부터 자신이 출연한 금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초과하는 가격 또는 수량의 금품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배당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9)</sup> 무한연쇄강방지법 제3조에서는 이러한 무한연쇄강을 개설·운영하거나 조직에 가입, 가입권유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무한연쇄강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sup>50)</sup>

또한 동법에서는 별칙규정으로서 제5조에서 ‘무한연쇄강을 개설하거나 또는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업으로서 무한연쇄강에 가입권유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7조는 무한연쇄강 가입을 권유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한연쇄강 영업의 예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자체인메일, 서브렌탈형, 홈페이지 자기증식형, 광고비즈니스형 등의 유형이 있으며, 금융파라미드 조직과 같은 투기성과 사기성이 강한 무한연쇄강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연쇄판매거래

48) Janvey v. Alguire, 647 F.3d 585, 597 (5th Cir. 2011).

49) 무한연쇄강방지에 관한 법률 제2조

50) 김홍석, ‘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파라미드판매금지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법개정방안’, 「기업소송연구」(기업소송연구회, 2008), 54면.

와는 별도로 금융피라미드에 해당하는 무한연쇄강을 금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무한연쇄강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한다는 특징이 있다.<sup>51)</sup>

### (3) 유럽연합(EU)<sup>52)</sup>

EU 회원국에 대해 법규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유럽위원회(EC) 지침(directives)은 1999년 방문판매, 피라미드판매, 다단계판매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불법적 다단계 판매의 정의를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판매 체계에 가입할 권리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하고,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상품판매와 관계없는 자를 모집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는 판매체계를 금지시키고 있다. 구체적 유형으로는 (1) 신규 투자자를 가입시킴으로써 상여금(bonus)형태의 금전적 대가를 지급 받는 시스템, (2) 기존 판매자가 가입 권유를 하여 신규 판매원이 부담하는 최초 투자비용과 관련해 기존 판매원이 수수료(commission)형태의 대가를 수령하는 시스템 및 (3) 기존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하위 판매원의 계속적 구매와 관련해 기존 판매원이 수수료를 받는 판매 시스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피라미드로 취급함은 물론, 중앙 집중적으로 조직된 판매체계가 아니고, 그 이익관계가 중앙 집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대가가 소액이지 않는 한 불법 다단계로 취급한다.

EU회원국들은 이러한 EC의 피라미드 관련 지침에 따라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서 규율하고 있으나, 불법적 피라미드 판매의 핵심내용은 대동소이 한 것으로 파악된다. EU의 피라미드 규제방식의 특징은 입법에 의해 불법피라미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의 판례에 의해 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51) 윤성호·노규수, '일본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744면 참조.

52) 김홍석·한경수, 앞의 책, 472면 이하 참조.

#### IV.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개선방안

##### 1. 신종 불법피라미드 금융수신행위의 범죄적 특징

최근 속출하고 있는 피라미드식 자금모집을 통한 금융피라미드사기, 인터넷을 통한 자금모집에 의한 금융사기, 허위투자설명회를 통한 금융수신사기 등과 같은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등과 같은 대형금융사기범죄는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금융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념상 금융범죄의 주된 유형은 금융기관에 의한 부정대출 등과 같은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의미하지만, 일정기간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이자지급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신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경제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융통행위를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금융행위 또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금융사기범죄를 정의하자면, ‘금융거래주체가 자신의 진정한 자금상태를 기망하거나 조작함으로써 금융거래에서 요구되는 신용 내지는 신뢰에 위반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금융거래주체 상호간의 신용 및 신뢰와 금융거래의 건전성을 침해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범죄’로 요약할 수 있다.

합법적 금융시장이 아닌 이른바 암시장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는 금융사기범죄라 할 수 있다.

##### 2. 형사처벌 규정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형사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피라미드 행위유형을 포섭한 충분한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우므로, 미국과 같은 불법파라미드 규제법을 제정해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일부 주법이나 일본과 독일 등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일응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문제되고 있는 불법파라미드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이 특별법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고 구성요건에서 충분히 포섭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수위가 피해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게 규정되어 있어 범죄예방에 필요한 위하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사전적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벌의 수위도 앞서 살펴본 파라미드식 영업방식에서 기인되는 고유한 범죄특성, 다시 말해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함에 따른 소 취하, 피해자 및 피해규모의 정확한 확인 곤란 및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됨에 따른 사건연루 회피성향에 의해 범죄 증거 및 증언확보의 어려움 등에 의해 낮아지게 되어 사후적 규제효과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나날이 범죄수단이 변형되고 있는 신종 파라미드범죄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으로는 온·오프라인 파라미드범죄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신설 형사처벌 규정을 기존 법령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금융사기범죄 유형의 파라미드범죄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법상 형벌조항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다수의 법령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획일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합법적 다단계업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을 규제하기 위한 행위규제법인 방문판매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경제사정에 어두운 일반 투자자나 경제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출자나 금전을 예탁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유사수신행위규

제법을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하에서는 유사수신행위법상 형사처벌수위의 상향조정을 입법개선방향으로 설정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효율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최근의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에 따른 피해가 본질적으로 금융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일반회사가 사전 등록이나 인기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융투자(권유)업이나 금융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의 위험성 역시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따른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취지에서 금융사기의 성격을 가지는 피라미드영업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규제수준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금융투자자 보호법제의 하나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물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법상 사기규정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해당 행위가 금융사기범죄로서 그로 인한 투자자 피해의 심각성 및 국가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사법규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조항과 형사처벌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내부정보에 기인한 주식거래 등과 같은 사법적 거래 관계에 일반 형법상 사기죄 등이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는 위법행위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규제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를 기본으로 하고, 해당 위법행위에 따른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과 별도로 이득액

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sup>53)</sup> 그 외 해당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sup>54)</sup> 민법보다 완화된 요건의 금전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조직을 이용한 금융사기행위인 신종 피라미드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문판매법을 적용하기에는 적용상 한계가 있다. 반면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위의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수준의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형사법규의 특성상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만, 직접적 규제입법인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본 법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가 기타 금융관련법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머물러 이 역시 충분한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가지 행위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근거해 설립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벌(제6조와 제7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형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신종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해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실제 피해액규모를 고려할 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유사금융사기범죄의 불법내용이나 이득액에 따라 형량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벌로서 벌금형이 범죄억지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2항.

5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5조 제1항.

금융사기범죄의 이욕범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벌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수위는 피해규모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적정한 형벌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금융사기범죄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와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 해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유사금융사기범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제거가 미흡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범행발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익이 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범죄행위를 유인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반복적인 범죄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로 취득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10조)규정을 개정해서, 현행과 같이 유체물이나 권리·이익이 화체된 유체물에 한정되어 채권 기타 무형적 이익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 한계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유사수신행위로부터 취득한 무형적 이익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금융사기 전담수사기관 강화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수사인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유사금융사기범죄의 특성을 가지는 불법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범죄는 대부분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속성을 가지는 범죄이므로 수사기관이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가 쉽

지 않다. 더불어 관련법규의 내용 역시 다양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변동이 심하여 수사요원이 회계, 부기, 금융, 무역, 법률 등 금융관련분야 수사에 요구되는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신종 불법피라미드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적시에 수사기관이 포착하고,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나 증거들을 은닉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검거 및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요원에게 금융관련법규 일반에 대한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 기회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사기범죄의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적기를 놓치는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은 범죄특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조직적 편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 4. 포상금제도의 현실화

제한된 수사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수많은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기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통법 등에서 이미 그 실효성이 검증된 바 있는 포상금제도를 현실화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피라미드업체의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충분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금융당국은 민·형사벌금(civil & criminal penalty)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하여 10만 달러나 부과된 벌금의 25% 가운데 적은 금액을 한도로 포상할 수 있는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

금제도의 포상금은 분기별 건당 최고 200만 원(세전)을 지급하고 있는데, 불법피라미드 업체들의 수신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의 피해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업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을 기준 20만 원~500만 원이던 것을 5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대폭 증액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5. 피해방지를 위한 공제조합의 홍보확대

불법피라미드 사기범죄의 피해자 측의 관점에서도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요소라 할 수 있으며, 국내 피해자들이 투자의 수익성만을 우선적으로 선호할 뿐 투자에 따른 손실위험 등은 뒷전으로 무시하는 투자성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유형의 신종 불법피라미드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해 공제조합이 홍보 활동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소극적 홍보활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홍보용 리플렛, 포스터, 사례집 배포 및 신문 공익광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언론 홍보, 방송인터뷰, 신문 및 잡기 기고 등을 통한 언론홍보, 각 관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역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과 더불어 신종 불법피라미드 업체의 유형과 특징적 요소, 투자자피해 등에 대해 각성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 V. 나가는 글

유통비용 절감에 따른 소비자 편의 제고라는 취지에서 발전된 다단계판매 방식이 최근 들어 불법파라미드식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파라미드조직으로 오해를 받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비자편익이 감소될 뿐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기 불황과 취업난, 저금리기조 등을 틈타서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모바일 기술을 결합하여 해외 금융투자상품에의 투자 등을 명목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여 폰지사기 형태로 운영되는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방문판매법,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적용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날이 진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기적 파라미드 영업행위를 경직된 성문법규로써 충분히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FX마진거래, 가상화폐인 코인, 모바일게임투자 기타 선진금융기법을 빙자한 다양한 유형의 파라미드식 금융사기행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신종 불법파라미드 영업행위들은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이 소액이며 돌려막기식으로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총 피해규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범죄탐지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손실액보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금전다단계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금융당

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여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여 금융관련 법령, 특히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몰수규정 개정을 통해 불법유사수신행위로부터 취득한 무형적 이익까지 몰수대상에 포함되도록 이익·가치몰수제도의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 금융산업분야의 다양성, 전문성 및 다변성에 기초하고 있는 신종 불법파라미드 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전문적인 금융사기 전담팀의 구성과 전문 수사인력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파라미드 업체들의 수신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투자자들의 피해규모 역시 유사한 수준임을 고려해 업체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신고를 유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금융사기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불가결한 전제요소로 피해자들의 투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고수의 보장을 미끼로 한 각종 유형의 신종 불법파라미드의 실체 및 대응요령을 습득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해 공제조합이 홍보활동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신현윤, 「경제법」 제6판 (법문사, 2014)
- 고형석, '다단계판매에 관한 미국법제 및 정의규정에 대한 연구',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단국대학교, 2010).
- 김창우, '다단계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 「기업법연구」 제8집 (한국기업법학회, 2001).
- 김홍석, '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페라미드판매금지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법개정방안', 「기업소송연구」 (기업소송연구회, 2008).
- 김홍석 · 한경수, 「개정 방문판매법 해설」 (도서출판 일새, 2012).
- 윤성호 · 노규수, '일본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권 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11).
- 이종구, '개정 방문판매법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 제18집 제2호, 539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8).
- 연구용역보고서,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직접판매공제조합, 2008. 2).
- 보도자료, '가상화폐인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 금융감독원 (2015. 11. 6).
- 보도자료, '선진금융기법을 빙자한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2014. 7. 10).
- 연합뉴스, "중국 투자로 하루 3% 수익"…유사수신 업체 기승'(2015. 6. 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2/0200000000AKR20150622047900002.HTML>.
- 머니투데이, "대박유혹'불법 유사수신업체 서울 강남에 집중' (2015. 6. 22),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5062208412294730&type=1&gu.bn=undefined>.
- 중앙일보, '비타민나무에 투자해 큰 돈 버세요...불법 유사수신업체 기승'(2015. 6. 22), <http://news.joins.com/article/18079746>.
- 헤럴드경제, '사이버 대동계 요주의..알고보니 은행 가상계좌 악용한 페라미드'(2014. 7. 2),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702000486>.
- 디지털타임스, "골드바-보석광산에 투자해 큰 수익"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 적

발'(2015. 6. 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2202109958785001](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62202109958785001).

보도자료, '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점점 교묘해지는 유사수신 수법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2015. 6. 23)

한국경제, '1천 억 사기 처도 원금 갚으면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옥중범죄' 도 활개' (2015. 12. 1).

주제어 : 다단계판매, 불법파라미드, 방문판매법, 금융사기, 소비자보호

접 수 일 : 2016년 5월 29일

수 정 일 : 2016년 6월 22일

게재확정일 : 2016년 6월 23일

〈Abstract〉

## Regulatory Suggestions for Restricting Illegal Pyramid Program

Sang-Il Moon

Multilevel Marketing and anti-pyramid statutes in Korea are designe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defrauded through illegitimate programs which lure participants with the promise of easy money by compensating them from the investment of additional participants rather than from legitimate product sales. These program have been called “Ponzi schemes,”“pyramids,” and many other names.

Although these laws have functioned to restrict illegal pyramid scheme which may cause their participants hundreds of millions of Korean Wons, the new types of illegal pyramid program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deficiencies inherent in current regulatory scheme in Korea,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revision which strengthen criminal penalties up to imprisonment to life.

In addition, I recommend in my paper for the authority concerned to implement the task force team and to increase the investigative team members. Also, the current report reward system for illegal pyramid scheme should be improved toward increasing the monetary incentives.

Through these improvements, consumers and direct sellers who has made a legal business can be protected, and reasonable mechanisms in distribution business area can be built in the future.

Key Words : Multilevel Marketing, Illegal Pyramid, Act on Door-To-Door Sales, Financial Frauds, Consumer Protection